



# 5 가지 알아야 할 사항 주거 공간에서의 정서적 지원 동물

- 1 정서적 지원 동물(ESA)은 개인이 가진 장애 증상 중 최소한 한 가지를 개선해 줌으로써 도움을 주는 동물을 의미합니다. 보조 동물이나 안내 동물과는 달리 정서적 지원 동물(ESA)은 주인이 가진 장애와 관련하여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따로 훈련되지는 않습니다.
- 2 거주지 제공자는 장애가 있는 세입자가 주거 환경을 충분히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동물에 대한 정책을 수정하거나 예외를 두어야 합니다. 이는 거주지 제공자가 장애가 있는 세입자가 정서적 지원 동물(ESA)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'반려동물 금지' 정책에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러나 보조 동물이나 안내 동물과 달리 정서적 지원 동물(ESA)은 거주지 제공자의 반려동물 금지 정책으로부터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.
- 3 반려동물 금지 정책이 있는 건물에 살고 있거나 입주하려고 한다면 세입자는 본인의 정서적 지원 동물(ESA)을 위한 합당한 거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세입자의 장애 및 정서적 지원 동물(ESA)을 필요로 하는 장애와 관련된 사항이 명확하지 않거나 알려져 있지 않으면 거주지 제공자는 세입자에게 정서적 지원 동물(ESA)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담당 의료진의 소견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. 거주지 제공자는 세입자의 요청을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특정 형식을 갖춘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. 전문 의료진으로부터 받은 소견서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얻은 문서는 정서적 지원 동물(ESA)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.
- 4 거주지 제공자는 세입자의 요청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정서적 지원 동물(ESA)을 허용하는 데 있어 건물 운영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경우 세입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. 이 조사는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이어야 하며 정서적 지원 동물(ESA)을 허용하는 것이 거주지 제공자의 운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거주지 제공자에게 과도한 재정적 또는 행정적 부담을 부과할 것인지 고려되어야 합니다.
- 5 거주지 제공자는 세입자에게 정서적 지원 동물(ESA) 허용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추가로 세입자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거주지 제공자는 반려 동물로 인해 발생한 실제 피해에 대해 세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[NJCivilRights.gov](http://NJCivilRights.gov) 을 방문하시거나 973-648-2700 로 문의하십시오.



뉴저지주 법무장관 집무처(NJ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)

[NJCivilRights.gov](http://NJCivilRights.gov)



차별금지법(LAD)에 따라 누구도 법의 위반을 신고하거나 차별에 대한 불만 제기 및 다른 기타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보복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 침해조사과(DCR)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뉴저지에서 모든 사람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차별금지법(LAD)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[여기를 클릭하십시오.](#)